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TV공익광고 방송확충에 관련 입법청원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의견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1년 8월 4일

청 원 인

성 명 : 조 동 현

주 소 :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롯데캐슬아파트 1104동
201호

전화번호 : 031-527-8332(휴대전화:010-4123-8332)

소 개 의 원 : (인) 외 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롯데캐슬아파트					
	성명 : 조동현					
건명	TV공익광고 방송확충에 관련 입법청원					
소개년월일	2011년8월 4일					
<p>청원인 조동현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소속 복지상임위원회 청소년의원입니다. 저희 복지상임위원회에서는 원활한 복지환경개선을 위하여 ‘공익광고’의 효율성을 증가 시키기 위해 ‘방송통신법 73조’ 개정을 청원합니다. 우리나라는 현 법에 제정으로 공익광고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. 하지만 횟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공익광고의 횟수는 여전히 적습니다. 이러한 이유를 공익광고가 저조한 시청률 시간대에 방송하는 것과 한 방송사만 집중적으로 방송하는 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. 또한 이런 식의 공익광고는 시간과 비용만 소비할 뿐이라 생각되어 아래에 법안을 청원합니다.</p> <p>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저희 청소년 의회는 이러한 방송통신법 제 73조 (방송광고등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 73조 ④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높은(15%이상)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 의무적으로 20초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.</p> <p>신구문 대조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현행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개정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방송통신법 제 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</td> <td>방송통신법 제 73조 ④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높은(15%이상)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 의무적으로 20초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이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.</p>			현행	개정문	방송통신법 제 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	방송통신법 제 73조 ④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높은(15%이상)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 의무적으로 20초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.
현행	개정문					
방송통신법 제 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	방송통신법 제 73조 ④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높은(15%이상)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 의무적으로 20초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.					
소개의원인						

청원서

1. 제안이유

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윤원호 의원(열린우리당)은 29일 한국방송광고공사(KOOBACO)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익광고를 방송한 횟수는 EBS(639회), MBC(571회), KBS1(544회), KBS2(514회), SBS(443회) 순이었다고 말했다.

또 황금시간대(오후 8~11시)에는 EBS(104회), KBS1·SBS(각 35회), MBC(6건)의 순이었다. KBS2는 단 한 차례도 방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해에도 SBS는 황금 시간대에 67회 공익광고를 방송한 반면, KBS2와 MBC는 각각 8건과 9건에 그친바 있다. 윤 의원은 "KBS·MBC·SBS 등 TV3사의 올해 공익광고 집행률이 지난해에 비해 30.5% 줄어들었으며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황금 시간대에 방송한 비율은 3.7%에 지나지 않았다"며 "방송사들이 광고가 팔리지도 않는 시간대에만 공익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"고 지적했다.

위에 자료와 같이 윤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는 하였지만 법안으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

2. 주요골자

□ 방송통신법에 관한 법률 제 73조 ④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3조 ④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높은(15%이상)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 의무적으로 20초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.

□ 신구문 대조표

현행	개정문
방송통신법 제 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	방송통신법 제 73조 ④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높은(15%이상)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 의무적으로 20초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.

청원인 성명 : 조동현

청원인 주소 :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롯데캐슬 1104동 201호

청원인 전화번호: 031-527-8332

【별첨 1】

청원인 서명날인부

연 번	성 명	주 소	날 인	비 고

소개의원 서명날인부

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

1.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, 청원소개의견서, 청원서 각각 3부씩(이중 2부는 사본)이며,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. 청원제출용지

- ① 「제목」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.
- ② 「청원인 주소, 전화번호, 성명」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「성명」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 「날인」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.

[예] 성명 : ○○주식회사

 대표이사 홍길동 (인) 외 24인(법인)

-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.
-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3. 청원소개의견서

-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.
- ② 「소개의견」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.
-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.

4. 청원서

-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, 전화,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,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, 취지,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서

연 번	의 원 명	날 인	소 속 정 당	소속위원회	선 거 구	비 고

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.

-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(A4)규격(가로210mm, 세로297mm)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.